

제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147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1475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6069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창훈

피고, 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성

변론 종결 2020. 10. 28.

판결 선고 2020. 11. 11.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6069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F 전 5121m²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8. 8. 접수 제29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류호중

판사조병대

판사문종철